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성 분석연구*

이 춘 화**

- I. 서 론
- II.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황
- III.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성 분석
- IV.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V. 결 론

I. 서 론

개정소년법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청소년 비행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그가 지역사회에 끼친 해악만큼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그를 시설내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대한 비행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케하는 대안적 처분이다.¹⁾

고전학파에 의해 응보형론이 주장되던 근대 초기에서 19세기말까지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이 강조되었으나, 19세기말에 등장한 실증학파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특별예방론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선진제국의 형사사법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이 주장된 초기에는 범죄인을 시설내에서 교육, 개선하는데 치중하였으나, 점차 시설내처우의 한계가 지적되어 범죄자를 구금으로부터 우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부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른 제도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제도도 그러한 현대 형사정책사조의 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법적 성격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즉 영국의 사회봉

* 이 논문의 설문조사는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음.

**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원

1) 윤재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그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법무부, 1985), 73면.; 정동기,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법무부, 1989), 285면.

사명령은 범죄자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고하는 것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고유한 주형(主刑)으로 행해지는 독립한 처분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벌금채납에 의해 구금에 직면한 범죄자에 대한 자발적인 구금의 대체로서 형의 유예에 따르는 부가적 선택권이거나, 보호관찰 기간내에 부과되는 부담의 한 종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기간중에 보호관찰에 부수되는 병과처분이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기능적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처벌적 기능: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적인 요소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단지 여가의 박탈에 의해서만 형벌로서의 임무를 이행해 왔다. (2) 배상적 기능: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입힌 해악에 대한 보답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득을 주는 노동의 수행에 의해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3) 사회복귀적 기능: 이는 봉사작업이 범죄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쳐 그들의 사회복귀 또는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의 수행에 의해 사회적 책임감이 양성되고, 공동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기를 수 있으며, 여가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흥미와 재능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으며, 근로습관을 확립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해와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본 제도의 시행현황을 고찰하고 사회봉사명령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황

1. 서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88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소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입장³⁾도 있었으나,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왔던 것은 아니며, 외국에서도 보편적인 개념정립이 되어있다고 보다는 오히려 채택국가의 형편에 따라 그 실정에 맞는 개념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개정소년법도 본 제도의 개념이나 성격에 관한 자세한 설명없이 단지 2개조의

2) W. Young, *Community Service Orders*,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79), pp. 35-50.

3) 법무부는 1987년 11월 19일 '소년법 개정요강에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대법원등 76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의견조위를 실시하였다. 이때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에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소년피고인의 거부감으로 개선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동기,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제 113집, (법무부, 1989), 273-280면.

2개항에 걸쳐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개념과 성격은 해석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법규정을 보면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단기보호관찰) 또는 제3호(보호관찰)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4항에서 「사회봉사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 이에 병과하여 보호관찰기간중 일정기간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도 보호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립된 처분이 아닌 주된 처분에 병과하는 부가적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적용대상은 16세 이상의 소년으로 죄명에는 제한이 없고, 명령시간은 단기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에는 50시간이내,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이내이며, 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

해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은 명령을 고지할 때 총 사회봉사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및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으나(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2항), 통상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총 사회봉사시간만을 고지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면 집행하지 아니하고, 준수사항 위반기에는 보호처분변경의 대상이 되며, 재범시에는 취소될 수도 있다.

2. 시행경위 및 현황

1) 시행경위

우리나라 소년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법원도 집행기관의 집행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명령을 내릴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상당기간 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1989년 11월 11일 사회봉사프로그램 실시계획⁵⁾을 마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동 법원은 1989년 11월 14일부터 비행소년에 대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서울보호관찰소는 향후 1년을 내부적으로 실험실시기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선택을 구사하고 있으며,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해 온 8차에 걸친 시행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4) 강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효율적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법무부, 1990), 61면.

5) 계획안에 관하여는 강지원, 위의 논문, 61-62면 참조.

2) 집행현황

(1) 집행현황

지금까지 전국 각 보호관찰소의 집행현황을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그 중에서 서울보호관찰소의 접수 및 집행현황은 <표 2-2>와 같다. 서울보호관찰소는 1990년 10월 19일 현재 제1기부터 제8기까지 194명을 집행하였으며, 취소, 처분변경, 구속중은 모두 재범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한 인원이다.

또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접수 및 집행된 비행소년의 연령별, 비행별, 직업별, 명령시간별 현황은 <표 2-3>과 같다.

2) 사회봉사 실시현황

서울보호관찰소는 1990년 1월 30일부터 1990년 10월 19일까지 총 8차에 걸쳐 194명의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였다. 제1기부터 제8기까지 사회봉사명령이 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기는 1990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 연속으로 실시되었는데, 대상은 학생으로 25명이 수료하였다. 봉사장소는 제1일에는 종로, 제2일과 4일에는 정독도서관, 제3일과 5일에는 어린이대공원이었다.

제2기는 학생반과 비학생반으로 나누어 학생반은 1990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정독도서관에서 실시하여 8명이 수

<표 2-1> 전국 보호관찰소별 사회봉사명령 현황

(1990. 9. 30. 현재)

구 분	접 수	집 행
서울	420	194
인천	72	23
수원	190	98
춘천	1	1
대전	17	4
청주	58	37
대구	118	62
부산	263	45
마산	49	13
광주	95	11
전주	137	70
제주	22	17
강릉	9	6
안동	21	16
경주	41	22
진주	43	21
목포	34	16
순천	28	6
계	1,618	665

자료: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료하였고, 비학생반은 199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제1일에는 창경궁, 제2일과 3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제4일에는 서울직심자청소년복지관, 제5일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40명이 수료하였다.

제3기부터 제5기까지는 모두 학생이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각5일씩 주중 연일봉사로 이루어졌는데, 제3기는 1990년

<표 2-2>

서울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현황

(1990. 10. 20. 현재)

구 분	접 수	집 행	취 소	처분변경	구 속 중	사 망	이 송	집행미성
계	420	194	3	1	4	0	9	209

자료: 서울보호관찰소

〈표 2-3〉

서울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현황

(1990. 10. 20. 현재)

연 령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계
접 수	63	105	123	89	40	420
집 행	21	42	65	47	19	194

비 행	특수절도	폭력 행위등	강도상해	강간치상	독극물 섭취반	기타	계
접 수	86	160	87	39	15	33	420
집 행	44	81	36	17	8	8	194

직 업	학생	공원	학원생	종업원	노동	무직	기타	계
접 수	168	67	51	28	5	98	3	420
집 행	90	30	35	6	3	30	0	194

시간	50시간이하	80-100시간	150시간	180-200시간	계
접 수	283	90	30	17	420
집 행	169	15	9	1	194

자료 : 서울보호관찰소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19명, 제4기는 199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16명, 제5기는 1990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12명이었다.

제6기는 학생만으로 구성되어 1990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동안 제1일에는 종묘, 제2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제3일에는 서울시립 양로원, 제4일에는 서울직접자청소년복지관, 제5일은 한강시민공원에서 봉사하여 39명이 수료하였다.

제7기는 1990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학생 14명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제8기는 학생이 아닌자 21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데, 1990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1일에는 종묘, 제2일에는 서울시립양로원, 제3일에는 라파엘의 집, 제4일에는 국립묘지, 제5일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봉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사대상자를 학생과 비학생으로 나누어 편성한 것은 대상자들 간에 어느 정도 신분상 동질감을 갖는 것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비학생의 경우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에서부터 공원, 무직자까지 섞여있어 동질감이란 면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봉사일정은 봉사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5일간 매일 연속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주중이나 주말에 1일씩 여러주에 걸쳐 시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봉사분야도 매일 장소를 바꾸어 실시하기도 하고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여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봉사가 실시된 장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묘, 창경궁, 정독도서관, 어린이대공원, 한강시민공원,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적십자청소년복지관, 서울시립양로원, 라파엘의 집, 국립묘지의 모두 10곳으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러한 봉사분야를 택한 이유는 이 시설들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고 참가자 자신들이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시설제공자 측에서도 도움이 되리라는 고려에서였다고 한다. 각 장소에서의 봉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묘와 창경궁에서는 고사목 및 화단 정리, 청소, 눈치우기를 실시하였고, 정독도서관에서는 청소 및 눈치우기와 조를 나누어 헌책제본, 의자수리 및 교체, 열람대 낙서 지우기를 실시하였다.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식물원 화초에 물주기, 동물사 청소, 수목관리, 잔디포말정비를 실시하였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쓰레기줍기, 시설물관리보조를 하였으며, 라파엘의 집에서는 장애자들의 활동보조와 수영지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에서는 묘역 환경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매일의 일정은 아침에 보호관찰소에 집합시켜 현장으로 인솔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이 끝난 후 매일 그날의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봉사의 제1일에는 부모님 참석하에 입소식을 한 후 보호관찰소장의 특강을 실시하

고 있으며, 마지막날에는 수료식을 갖고 종합평가를 한 후 참가자의 소감발표시간을 갖는다.

III.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성 분석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과 설문구성

1990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료한 자는 모두 194명으로 이들에 대해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해준 사람은 총 114명이었으며, 이 중 검사과정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11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자문과 사회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작성한 소감문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구성은 사회봉사명령의 유용성을 알아보기위한 질문 14문항, 사회봉사명령 수료후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위한 질문 11문항,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질문 11문항,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위한 질문 9문항, 총 45문항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설문지상의 문항배열은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반응틀에 따라 응답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배열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주제영역에 따라 다시 설문이 구분되어 제시될 것이다.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조사는 1990년 9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수료자를 서울보

호관찰소에 소집하여 실시하였다.

제1차조사는 1990년 9월 20일에 소집하여 실시하였는데, 총 49명이 참석하여 조사에 응해주었다. 제2차조사는 1차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많은 수가 학생이거나 취업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1990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에 걸쳐 총 47명을 소집해 개별조사의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제3차조사는 1990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8명을 소집해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자료는 백분율에 의한 단순빈도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의 전반적인 분포를 알아 보았으며, 총 조사대상자 114명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분석대상이 된 유효사례수는 111매였다. (유효율 : 97.4%)

3) 연구의 한계

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불과 1년여 전의 일이며, 또한 실제로 본 제도가 실시된 것은 지난 1월의 일이다. 따라서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향후 1년간을 시험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바, 이 연구의 결과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지금까지 시험실시된 바에 관한 평가로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조사의 대상자는 전국 18개 보호관찰소 중에서 서울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수료자만을 택했다. 사회봉사명령의 시행지역별 차이를 감안해 볼 때 이 조사의 결과를 전체 사회봉사명령 수료자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이 시행 호시지역이며 타지역의 특수성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한점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봉사분야, 일정 등의 차이에 따른 교차분석을 통해 표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대상이 된 표본수가 적은 한계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이를 시도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 응답자의 주요특성

조사결과와 분석에 앞서 먼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및 처분의 종류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사항을 보면 전체 93명 분석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16세가 17.1%(19), 17세가 36.9%(41), 18세가 34.2%(38), 19세가 8.1%(9), 20세가 3.6%(4)로서 17-18세가 전체의 71.2%(7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종사하는 일은 학생이 60.4%(67), 학원생이 12.6%(14), 취업자가 15.3%(17), 무직이 11.7%(13)로서 학업청소년이 전체의 73.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청소년의 직종은 종업원, 회사원, 노동, 공원, 운전기사, 취업실습생 등으로 이 중에서 종업원이 전체 대상자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 대상자의 성별은 지금까지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모두 남자인 바, 전원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대상자의 가정환경적 사항을 보면 양부모와 다함께 거주하고 있는자가 전체의 79.3%(88)를 차지하고 있고, 보호자의 학력분포는 국졸이하가 11.7%(13), 중졸이하가 20.7%(23), 고졸이하가 55.0%(61), 대졸이상이 12.6%(14)로 고졸이상의 학력이 전체의 67.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분포는 30만원미만이 8.1%(9), 30-70만원이 39.6%(44), 70-110만원이 29.7%(33), 110만원이상이 22.5%(25)로 70만원이상의 수입이 전체의 52.3%(5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관심이 있다”가 88.3%(82), “과잉보호한다”가 8.1%(7)로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답한 사람은 3.6%(4)에 불과했다.

분석대상자의 비행별분포는 폭력행위가 전체의 36.9%(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상해가 19.8%(22), 특수절도가 16.2%(18), 강간치상이 12.6%(14), 절도가 9.0%(10), 독극물범위반이 2.7%(3), 기타 2.7%(3)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처분은 단기보호관찰이 전체의 74.8%(83)를 차지하고 있어 그 결과 사회봉사명령시간도 50시간이하가 전체의 79.3%(88)를 차지했고, 80-100시간이 11.7%(13), 150시간이 7.2%(8), 180-200시간이 1.8%(2)로 나타났다.

2. 조사자료의 분석

1)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

사회봉사명령 참가후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봉사의식, 근로의식, 준법의식, 긍정적 자아인식, 사회적응력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11개 문항을 선정해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1) 봉사의식

먼저 봉사의식에 있어서의 변화의 하나로 사회봉사 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임을 알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

다”가 37.8%(42), “다소 그렇다”가 52.3%(58)로 전체 응답자의 90.1%(10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이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작업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문항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11.7%(13), “다소 그렇다”가 41.4%(46)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3.2%(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긍정의 정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라는 강한 긍정의 응답은 봉사의 보람에 관한 질문에서는 37.8%(42)이나 계속적인 봉사에 관한 질문에서는 11.7%(13)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들의 사회봉사참가가 비자발적인 처벌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설문질문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한 응답자의 반응틀에 따라 응답했기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이 봉사작업 자체에는 보람을 느낄지라도 그러한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2) 근로의식

여기서는 근로의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아 보았는데, “땀흘려 일하는 것이 값진 것임을 알았다”라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80.2%(89)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내 대부분이 사회봉사를 통해 근로의 보람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3.2%(59)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고 있어 앞의 질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반응하고 있으며, 이것은 응답자들의 근

로 활동이 무상봉사였던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질문 모두 “그렇다”라는 긍정의 반응이 각각 94.6%(105)와 89.2%(99)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근로의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준법의식

사회봉사 참가후의 준법의식, 질서의식 및 법규범에 관한 의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문항을 설정했다.

먼저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6.8%(63), “다소 그렇다”가 27.9%(3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4.7%(94)가 법을 어겼을때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으로 느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66.7%(74), “다소 그렇다”가 23.4%(26)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0.9%(1)에 불과해 법, 질서의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4) 긍정적 자아인식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알아 보았는데, 먼저 “나도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다”라고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3.2%(48), “다소 그렇다”가 46.8%(52)로 전체 응답자의 90.1%(100)가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자의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일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1.4%(57), “다소 그렇다”가 35.1%(39)로 전체 응답자의 86.5%(9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감이 신장되

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응력

사회적응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책임감, 인내심, 협동심에 관한 의식의 변화를 물어보았다.

(가) 책임감

책임감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매우 그렇다”가 69.4%(77), “다소 그렇다”가 27.9%(31)로 긍정적인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97.3%(10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인내심

“어려운 일도 참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는 진술에 대한 반응은 긍정의 응답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96.4%(107)와 3.6%(4)로 나타나 대부분이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에 변화가 왔음을 보여준다.

(다) 협동심

협동심에 관한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다”에 대한 반응은 긍정의 응답이 89.2%(99), 부정의 응답이 10.8%(12)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응력 면에서의 다른 질문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유용성

(1) 제도적 성격의 인식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본 제도의 성격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았다. 문항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는 배상, 처벌, 교정의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본 제도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여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는 제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3.2%(59),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6.9%(41), “어떤 성격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0.9%(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본 제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처벌적 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긍정적 효과

여기에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분석 대상자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 문항을 제시하고 2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자의 반응은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배상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3.1%(29),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점”이 유익했다는 사람이 17.6%(39), “땀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된 점”이 유익했다는 사람이 19.8%(44),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점”이 유익했다는 사람은 26.6%(59), “법, 질서, 공중도덕의 중요성을 안 점”이 유익했다는 사람은 23.0%(51)로 나타나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비행성향의 교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봉사실시장소에 대한 반응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이 집행된 장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3점척도로 알아보았다. 분석 대상자중에서 각 장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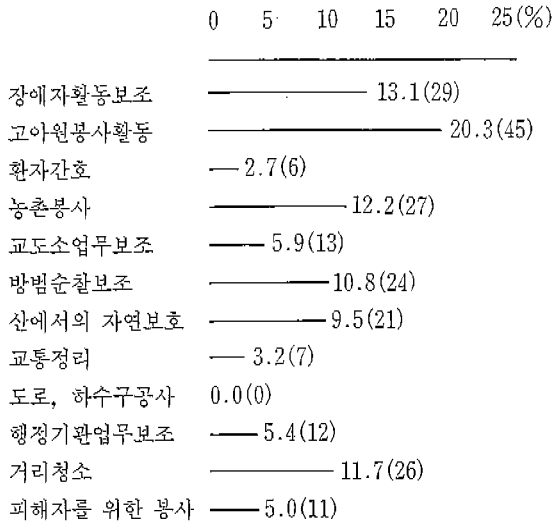
참석했던 사람은 서울시립양로원이 37명, 종묘가 44명, 서울적십자청소년복지관이 57명, 정독도서관이 22명, 어린이대공원이 76명, 서울지방검찰청이 32명, 창경궁이 20명, 한강시민공원이 55명으로 다음에서 제시된 비율은 각 장소의 참석인원수에 대한 백분율이다.

먼저 “매우 좋았다”는 반응을 보면, 서울시립양로원은 83.8%(31), 종묘는 20.5%(9), 서울적십자청소년복지관은 52.6%(30), 정독도서관은 27.3%(6), 어린이대공원은 59.2%(45), 서울지방검찰청은 25.0%(8), 창경궁은 20.0%(4), 한강시민공원은 30.9%(17)로 나타나, 서울시립양로원에서의 봉사활동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나쁘다”는 반응의 경우는 서울시립양로원이 2.7%(1), 종묘가 11.4%(5), 서울적십자청소년복지관이 5.3%(3), 정독도서관이 13.6%(3), 어린이대공원이 6.6%(5), 서울지방검찰청이 3.1%(1), 창경궁이 5.0%(1), 한강시민공원이 18.2%(10)로 나타나, 한강시민공원과 정독도서관에서의 봉사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많은 수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고, 정독도서관의 경우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비해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4) 사회봉사활동내용의 선호도

다음에서는 사회봉사참가자들의 활동내용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의 실시예와 서울보호관찰소의 실시계획안을 참고로 12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기존에 참가했던 봉사활동에 비추어 앞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

〈그림3-1〉 선호하는 사회봉사활동내용(복수응답)



택하게 하였다. 전체적인 응답빈도를 도표를 통해 알아보면 〈그림3-1〉과 같다.

반응결과를 보면 고아원봉사활동이 20.3%, 장애인활동보조가 13.1%로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도로, 하수구공사는 전혀 선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활동장소에 대한 설문에서 서울시립양로원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유의미한 반응으로 보이며, 이는 이들 응답자가 대물(對物)봉사보다는 대인(對人)봉사를 선호하고 있고, 더 나아가 노인, 장애인, 고아 등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사회봉사를 통해 처벌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능동적인 수혜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사회봉사의 성격이 덜 강제적일수록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사회봉사운영의 적절성

(1) 병과처분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수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부가적 처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과처분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없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면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 그 결과는 자신이 보호관찰과 병과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이 보호관찰만 받는 사람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7%(3)에 불과했고, “나의 잘못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는 55.0%(61)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서 더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42.3%(47)에 이르러 대부분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신교육

서울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유익하다” 61.3%(68), “그저 그렇다” 33.3%(37), “별로 도움이 안된다” 5.4%(6)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여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의 병과가능성을 고려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겠다.

(3) 봉사장소의 개방성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은 “좋다”가 41.4%(46), “어떤 것도 상관없다”가 34.2%(38)로 나타나 75.7%(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도 24.3%(27)에 이르고 있어 앞의 사회봉사실시장소에 대한 반응조사에서 지적된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4) 봉사기간의 적절성

현재 사회봉사는 하루 10시간씩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점을 모

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일일 봉사시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분석 결과는 4시간 이하가 적절하다는 사람이 7.2%(8), 6시간이 적절하다는 사람은 41.4%(46), 8시간은 25.2%(28), 10시간은 26.1%(2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3.9%(82)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시간보다는 좀더 적은 시간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6시간 정도의 봉사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나 직장생활의 방해여부

소년법 제33조 4항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응답자중 학생, 학원생,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참가가 그들의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전체 분석 대상자의 88.3%(98)가 응답하였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반응이 31.6%(31)였고, “지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4%(67)를 차지해 봉사일정이나 시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평일 일과후 야간에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13.4%(9), 주말이 좋다는 사람은 28.4%(19), 방학이나 휴가때 봉사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은 가장 많은 58.2%(39)를 차지해 평소의 일과와 병행하는 사회봉사참가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봉사일정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의 봉사일정은 평일 일과시간의 연일봉사와 주말 또는 평일의 주1회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주1회봉사가 좋다는 반응이 50.5%

(56)로 가장 많고, 주중 연일봉사의 경우는 27.0%(30), 주말봉사의 경우는 22.5%(25)로 나타나, 전체응답자의 73.0%(81)가 연일봉사보다는 봉사일정을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7) 인원수

사회봉사활동에 함께 참가하는 적절한 인원수에 관한 조사결과는 20명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8%(52), 20~40명 사이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40.5%(45), 40~6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1.8%(2), 몇 명이라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10.8%(12)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87.4%(97)가 40명 이하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여 대부분 인원수가 적은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불참문제

여기에서는 응답자가 사회봉사에 불참하거나 불참하려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63.0%(70)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9%(41)였다.

다음으로 불참하거나 불참하려는 생각을 한 경우에 그 이유는 “직장이나 학원때문”이 31.7%(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짜증나고 귀찮아서”가 26.8%(11), “피곤하고 힘들어서”가 22.0%(9),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므로”와 “날씨가 나빠서”가 각각 7.3%(3), 기타 4.9%(2)로 나타났다.

(9) 불편했던 점

여기에서는 응답자가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두가지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편했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시

간상의 문제로 응답자의 20.1%(3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통문제는 15.5%(30), 일정 및 시기가 13.4%(26), 작업장소의 문제는 11.3%(22), 점심식사가 10.8%(21), 작업내용이 10.3%(20), 관리상의 문제가 5.1%(10), 기타 2.6%(5)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봉사시간이 길다”, “너무 일찍 시작한다”, “관찰소에 집합하는 과정에서 시간낭비가 많으니 직접 봉사장으로 가고 싶다”, “휴식시간이 적다”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작업장소의 문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불편했다”, “사람들이 쳐다봐서 창피했다”, “작업환경이 나빴다”, “선풍기가 없었다”등의 의견이 있었고, 일정 및 시기에 관해서는 “작업 및 학업에 지장을 주었다”, “매일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나빴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눈비가 올 때 작업을 해서 힘들었다”등의 의견이 있었다. 작업내용의 면에서 불편했던 점은 “작업이 힘들다”, “단순노동이고 너무 육체적인 일만 한다”, “작업내용에 차별

이 있다”등이었고, 관리상의 문제는 “강제적이다”, “장비가 부족했다”, “감독관이 무관심했다”등이 있었으며, 기타 “인원수가 많거나 적다”, “조장이 없어 무질서했다”등의 의견이 있었다.

IV.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1.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1) 사회봉사명령의 강제성

현행 법규정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소년심판 규칙 제31조 1항에서 이러한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본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우리 헌법 제12조 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인권협약과 국제노동기구협약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어 영국의 경우 반드시 범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의 강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사회봉사명령의 전담기구 불비

현재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의 실시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업무와 함께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은 우리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보호관찰기간내에 부수되는 처분이 라는 점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표 3-1〉 불편했던 점(복수응답)

내 용	빈 도 (명)	비 율 (%)
없다	21	10.8
시간상의 문제	39	20.1
교통	30	15.5
일정 및 시기	26	13.4
작업장소의 면	22	11.3
점심식사	21	10.8
작업내용의 면	20	10.3
관리상의 문제	10	5.1
기타	5	2.6
계	194	100.0

*탈락수 : 28(무응답)

본 제도의 특수성과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적인 운영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2) 운영상의 문제

(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선정의 문제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중에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명령 적격자의 기준은 16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단지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의 적격 소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보호용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소년,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해 생활궁핍의 체험이 없는 소년, 생활이 나태하고 근로정신이 희박한 소년, 과소비적이고 퇴폐향락의 생활습성이 고착된 소년,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고 가족과의 유대가 미약한 소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선고되어 사회봉사가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이 적절히 구분되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시행상의 문제

(가) 시간적인 면

사회봉사명령은 봉사참가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봉사의 시기와 일정 등이 문제가 된다.

우선 현재의 사회봉사 집행은 평일 일과시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휴일에 집행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취업청소년의 경우 평일 일과시간의 봉사는 그들의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는 직원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시행에 무리가 있다.

둘째 봉사일정에 있어 현재는 주1회봉사와 주중 연일봉사의 두가지를 실시하면서 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주중 연일봉사의 경우 집중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 교육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또한 학생이나 취업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주1회봉사도 사회봉사의 부담을 오랜 시일동안 갖게 되어 정신적 부담과 불참의 우려가 있어 양자가 서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봉사의 개시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기간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단기보호관찰의 경우 일정이 촉박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문제가 된다.

(나) 작업내용 및 장소의 면

사회봉사작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봉사의 가치가 있는 등 사회에 유익한 것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봉사의 의미와 근로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면 집행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관리자측에서 시설운영 공개, 고유업무 장애, 번잡성등을 이유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적정한 봉사단체나 시설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다) 관리의 면

현재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의 특수성을 들어 정부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감독도 관찰관이 직접 관

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은 참가자들에게 통제와 인상을 주어 자발적인 봉사의 유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정부기관이 프로그램개발 등의 전과정을 전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리상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집합장소의 문제, 집합후 운송문제, 장비동원문제, 교통문제, 점심식사문제 등이 있다.

(라) 대상자구성의 면

대상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인원수는 교육적인 측면과 감독상의 문제로 인해 40명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둘째 대상자가 이질적으로 구성될 경우 봉사참가자간의 불화, 비행학습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령, 신분, 죄질, 전과 등을 배려한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단지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만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어, 비학생의 경우 학원생, 취업청소년, 무직자가 함께 봉사하게 되어 동질성의 면에서 문제가 되며, 따라서 좀더 세분된 구성의 배려가 요구되나, 이는 봉사내용, 봉사기간, 봉사시기가 휴일인가 주중인가에 따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적격자선정을 위한 제도마련

영국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할 때 법원이 범죄자의 사회봉사적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즉 영국의 형사사법법 제15조 2항은 법원이 유죄자에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적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의 선고전에 사회사업가가 범죄자 및 그 환경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참작하여 적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사회봉사명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히 안정된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의 적격성 판단은 개개인의 종합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법규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은 아니나 법관의 판단자료는 현실적으로 제출된 증거의 에는 없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보호관찰관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회보고서와 같은 감정의견서에 의해 적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소년감별소에서의 감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제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의 선고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전담기관의 설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시행은 보호관찰소가 하고 있으나 그의 구체적인 실현은 보호관찰업무의 상하위계질서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관리사업주체인 사회봉사소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독립된 기구의 설치가 요망되며, 이외에도 보호관찰소내에 사회봉사명령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본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인 바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효율적 운영방안

(1) 시간적인 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업청소년이나 취업청소년은 그들의 학업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더불어 육체적인 무리를 주지 않도록 일일 봉사시간은 현재의 10시간보다는 하향조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일정도 주중 연일봉사보다는 주1회나 2회정도가 생활에 지장도 적고 육체적 피로도 적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또한 봉사의 개시 시기는 단기보호관찰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이를 고려할 수 없겠으나, 보호관찰의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의 고려와 함께 일반적으로 재비행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작업내용 및 장소의 면

사회봉사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면서 대상자들을 개선, 교육시키는데 유익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들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익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고,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근로의 참뜻과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어 비행성의 교정에 기여한다면 특정 수익자를 위한 일, 예를 들면 모내기 등의 농촌봉사활동, 노약자, 고아 장애인 등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장소의 선정에 있어서는 행형의 중요한 지배원리의 하나인 형벌의 개별화 원리에 따라 대상자의 인격 및 인성에 따른 특

정한 봉사장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무직자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을 직업훈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현장의 공개성 문제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봉사시간, 봉사내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본다.

(3) 관리의 면

현재 사회봉사명령의 시행은 보호관찰소의 직접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봉사시설, 장소의 다양성 등 본 제도의 특수성때문에 정부기관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봉사프로그램의 계획을 보호관찰소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개별화원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란 측면에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현장지도와 감독도 관찰관이 직접 행하고 있어 소년들에게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봉사시설을 선정해 그 시설측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적인 지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단순한 현장감독의 경우는 현재의 보호위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밖의 교통, 장비, 식사 등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므로 재원의 확보와 직원의 증원이 이루어 진다면 해결될 것이다.

(4)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용

현재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2, 3회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은 소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받지 않은 소년이라도 그들의 보호관찰기간내에 본인의 동

의를 얻어 보호관찰의 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1호처분자의 경우도 적격자가 있으면 법원의 권고와 본인의 동의를 거쳐 사회봉사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째, 소년법 제32조 3항에는 그 법적성격은 다르나 병과처분의 하나로서 수강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봉사작업 전에 약간씩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무작정 봉사만 시키는 것보다는 정신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서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사회의 협조

비행소년의 사회복귀는 사회의 협조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범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더구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처우 중에서도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손해를 그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를 통해 배상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사회단체 및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제도를 홍보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사회봉사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은 세제상의 고려나 포상제도 등을 이용해 공중(公衆)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 모두의 협조체계 안에서만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난 1988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소년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해와 이의 효율적 시행방안의 모색을 위해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시행현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사회봉사명령 수료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비롯한 사회내처우제도의 출현은 시설내처우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죄인을 정규의 사법처리과정으로부터 우회시키고자 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은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72년 영국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입법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보호관찰기간중에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통합되고 누구에게나 다 유익하다고 인정될 그러한 봉사작업을 이루어냄으로써 긍정적인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구금에 대한 회의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적, 배상적, 사회복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부수되는 병과처분으로 설문조

사 결과 사회봉사 참가자들은 본 제도와 그의 운영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봉사 참가를 통해 봉사의식, 근로의식, 준법의식이 형성되었고, 긍정적 자아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응력이 양성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세째,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동의의 결여, 전담기구의 불비, 대상자선정의 기준 미비 등이며,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적적자선정을 위한 제도의 마련, 전담기관의 설치, 봉사장소 및 작업내용의 개별화, 보호관찰의 처우기법으로 활용, 수강명령과의 병과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입법의 보완과 재정의 확보, 전문직원의 양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 일반의 이해와 사회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의 방지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방위라는 형사정책의 이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원(1990),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효율적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 법무부.
- 김영란(1989), “개정소년법에 대한 일고”, 청소년범죄연구 제7집, 법무부.
- 법무부(1990), 외국의 보호관찰운영실태.
- 오영근(1988),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윤재윤(1985),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그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법무부.
- 이운호(1990), “범죄자에 대한 시설수용의 대체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 정동기(1989), “개정소년법에 대한 일고”,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부.
- 조준현(1989), “수형자의 분류와 인격검사”, 형의 과제와 실험, 법무부.
- (1989), “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 형의 과제와 실험, 법무부.
- Albrecht, Hans-Jörg & Schädler Wolfram (1986), “Gemeinnützige Arbeit” *Community Service*, Freiburg : TheMar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 Cartledge, Geoffrey C. (1986), “Community Service in England/Wales”, *Community Service*, Freiburg : The Marx Planck Institute for Forie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 Fielding, Nigel G. (1986), *Probation Practice*, Aldershot : Gower Publishing Co. Ltd.
- Tak, Peter J.P. (1986), “Community Service Orders in Western Europe,” *Community Service*, Freiburg : The marx Planck Institute for Forie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 Young, Warren(1979), *Community Service Orders*, London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ABSTRACT>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Chun-hwa Lee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s a new penal measure which is introduced by the revision of Juvenile Act in 1988.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s a substitutional disposition, that the offender is to fulfil a social service to recompense society which has been notionally injured instead of detaining him.

Broadly speaking, functional elements underly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re punishment,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 as follows. (1) Punishment : Community Service Order is implemented as a punishment by the community service is to fulfil a general obligation to recompense society which has been injured. (3) Rehabilitation : The community service order may rehabilitate through foster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contacting with other workers, the constructive use of leisure time, increasing employment chances, and the resumption of a work habit.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Chapter one is introduction. In chapter two, the present status of the Korean community service order is studied. Chapter three analyzes posi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f Korea. Chapter four suggests th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Chapter five is conclusion.

As the conclusion, the article presents following suggestions for effective applicati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in Korea. Firstly, the activating of juvenile delinquent selecting system, the establishing and organizing the social service office,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service place and contents are necessary. And the practical use as one of the treatment technique of probation and the connection with the attendance order are needed. Furthermore, the community people's attention and participant are need.